

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17597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9.

발 의 자 : 김성원 · 김선교 · 고동진
이인선 · 김태호 · 이종배
김정재 · 박충권 · 구자근
정동만 · 박성훈 · 김용태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강제추행, 간음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제한하고 있음.

하지만 강도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자격제한 기간을 절도 및 강도의 죄와 동일한 5년으로 두고있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형벌인 강도강간죄에 대한 자격제한 기간을 기존 성범죄 자격제한과 같게 하고자 함(안 제10조).

법률 제 호

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5호다목 중 “제305조의2의”를 “제305조의2, 제339조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“제343조까지의”를 “제338조까지, 제340조부터 제343조까지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10조(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 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 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 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날 또는 집 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p> <p>가.·나. (생 략)</p> <p>다. 「형법」 제297조, 제297 조의2, 제298조부터 제301 조까지, 제301조의2, 제302 조, 제303조, 제305조, <u>제3</u> <u>05조의2</u>의 죄</p> <p>라. ~ 바. (생 략)</p> <p>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</p> | <p>제10조(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가.·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305조의2, 제339조의</u>---</p> <p>라. ~ 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</p> |

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가. 「형법」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,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

나. (생략)

7.·8. (생략)

② · ③ (생략)

가. -----

-----제338조까지, 제340조부터 제343조까지의---

나. (현행과 같음)

7.·8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